

(앞쪽)

제 호		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(의견제출 통지)	
귀하			
「청원경찰법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과태료 부과 대상자	성 명		
	주 소		
과태료 금액			
과태료 부과 원인 행위	일 시		
	장 소		
	내 용		
적용 법령			
의견제출 기한		~	
<의견> 년 월 일 시·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직인			

<의견제출 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귀하께서 의견제출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4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%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,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5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등에 해당할 경우 50% 범위 안에서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의견제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6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기관

부서명		담당자	
주소		전화번호	
전자우편주소		팩스	